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년 2월 7일
제 안 자 : 강기필 의원외 4인

제안이유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기수당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인상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인상지급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각각 변경하여 조정함.(안제2조, 안제3조)
- 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에 맞게 새로이 정비함.(안제1조, 안제3조)

(제37회 - 1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1조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제목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및 제2항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이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u>350,000원</u>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생 략)</p> <p>제3조(회의수당)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당 <u>50,000원</u>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당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제1조(목적)회기수당..... </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u>550,000원</u>..... ②(현행과 같음)</p> <p>제3조(회기수당) ①..... <u>70,000원</u> 회기수당..... 회기수당..... ②.....회기수당..... </p>